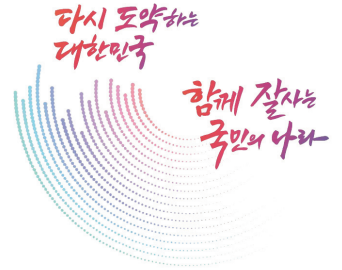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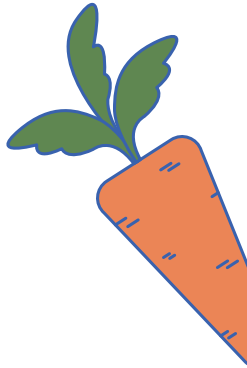
원산지표시종합안내

QR코드를 접속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2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3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4 벌칙

5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제도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 ❶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 ❷ 생산·가공하여 출하, 판매(통신판매 포함) 하거나
- ❸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입니다.

* 국산 농산물 222 품목,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국내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280 품목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1 참고)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 국산일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예시

올바른 표시 : 고사리(국산),
고사리(충청북도), 고사리(보은군)

올바르지 않은 표시 :
고사리(치악산), 고사리(덕곡리)

◆ 외국산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
(「대외무역법」에 따름)

* 수입완제품(수입가공품)의 경우도 「대외무역법」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예시

올바른 표시 :
돼지고기(칠레), 쇠고기(미국)

올바르지 않은 표시 :
돼지고기(유럽산), 쇠고기(워싱턴)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하는 경우

① 국내에서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원주시 15%)을 혼합한 경우
▶ 쌀(국산) 또는 쌀(국내산), 쌀(이천시 40%, 철원군 25%, 파주시 20%)



② 국산(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표시

예시

팥(국산 40%, 중국산 30%, 미국산 20%, 태국산 10%)을 혼합한 경우
▶ 팥(국산 40%, 중국 30%, 미국 20%)



◆ 이식·이동 등에 따른 원산지 변경 여부

1 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성장시킨 경우

예시

— 인삼, 도라지 등 작물체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
▶인삼(중국), 도라지(중국)



2 원산지 변경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

예시

—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
▶마늘(국산), 마(국산)



3 원산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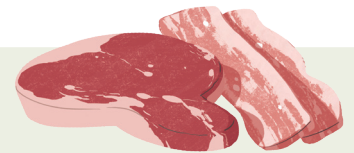
-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서 사육하다 도축한 경우

* 소 : 6개월 / 돼지·양·염소 : 2개월 / 그 외 가축 : 1개월(원산지 표기 시 출생국 함께 표시)

**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함

예시

— 돼지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2개월 사육 후 도축
▶돼지고기(원산지 : 국산, 출생국 : 미국)



- “표고버섯”의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 표시

예시

—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방법

중국에서 종균접종 후 배양

통관 후 국내에서 재배·채취

접종·배양

수입·통관

채취



접종·배양부터
수입·통관일
≥ 국내 재배 기간

▶원산지 : 중국

접종·배양부터
수입·통관일
< 국내 재배 기간

▶원산지 : 국산

표시방법

국산 농산물, 수입 및 반입 농산물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포장 표면적이 3,000cm ²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cm ² 이상~3,000cm ²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cm ²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②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본) 표시기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 제외]

◆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1순위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 1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미국 밀가루 98%, 국산 소금 2%를 혼합하여 부침가루를 제조한 경우

▶부침가루 : 밀가루(미국)

② 1순위, 2순위 원료 합이 98% 이상인 경우

- 1, 2순위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

예시

국산 찹쌀가루 76%, 중국산 팥 22%, 중국산 참기름 1%, 국산 소금 1%를 혼합하여 바람떡을 제조한 경우

▶바람떡 : 찹쌀가루(찹쌀: 국산), 팥(중국)

③ 그 외의 경우

- 1, 2,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 표시

예시

호주 밀가루 60%, 국산 팥 20%, 중국산 동부 10%, 국산 소금 5%, 설탕 5%를 혼합하여 팔빵을 제조한 경우

▶팔빵 : 밀가루(호주), 팥(국산), 동부(중국)

◆ 김치류 및 절임류의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한 김치류

- 고춧가루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② 고춧가루(고춧가루 가공품 포함)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③ 절임류

-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



◆ 원료 배합비율 순위가 중복되는 경우

① 순위가 중복되는 원료들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 예시 — ① A원료 30%, B원료 30%, C원료 25%, D원료 15%
▶ 1순위(A, B), 3순위(C) 원료 원산지 표시
- 예시 — ② A원료 30%, B원료 20%, C원료 20%, D원료 20%, E원료 10%
▶ 1순위(A), 2순위(B, C, D) 원료 원산지 표시
- 예시 — ③ A원료 30%, B원료 25%, C원료 15%, D원료 15%, E원료 15%
▶ 1순위(A), 2순위(B), 3순위(C, D, E) 원료 원산지 표시

◆ 농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①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예시 — 고추장 : 국산 찹쌀 50%, 호주산 밀가루 30%, 중국산 혼합양념 15%, 중국산 고추 5%를 혼합하여 제조한 경우
▶ 고추장 : 찹쌀(국산), 밀가루(호주), 혼합양념(중국), 고추(중국)
* 고추는 배합비율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니어도(3순위외의 원료) '고추'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추의 원산지를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이 수입완제품인 경우 가공품 자체(혼합양념)의 원산지를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② 제품명에 사용된 농산물의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3순위 외의 원료로서 1) 농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대상(663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물·주정·당류·당류가공품·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 **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지만, 해당 원료가 복합원재료 내에서 5순위 외의 원료일 경우
- *** 복합원재료 내 원료가 복합원재료로서 원료명을 생략한 경우
- 다만, 원재료명 표시가 생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명을 표시할 경우, 원산지도 함께 표시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해야 함

알아두기



농산물 명칭이란?

「농축수산물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정의된 품목에 따른 명칭 참조

- 예시 — 농산물 명칭인 것 : 쌀, 고추, 쇠고기, 사과, 당근, 고구마, 우유 등
농산물 명칭이 아닌 것 : 김치, 한과, 치즈, 고기, 과일, 야채 등

◆ 복합원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원료

① 국내에서 가공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표시 *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 가능

예시

— 곱가네 양념장 원료 구성

1순위 복합원재료

된장 40%

원료 구성성분 : 호주산 콩 60%, 미국산 밀가루 40%

원산지 표시대상 : 호주 콩, 미국 밀가루

2순위 복합원재료

고추장 3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찹쌀 40%, 중국산 고추 40%, 미국산 밀가루 2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찹쌀, 중국 고추

3순위 원료

콩 1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콩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콩

3순위 외 원료

양파 5%, 마늘 5%, 고추 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양파 100%, 중국산 마늘 100%, 중국산 고추 100%

원산지 표시대상 : 해당 없음

▶ 원산지 표시 : 곱가네 양념장

[된장(콩 : 호주, 밀가루 : 미국), 고추장(찹쌀 : 국산, 고추 : 중국), 콩(국산)]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1가지 원료 표시



② 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

-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가지 원료와 고춧가루 표시

예시

— 매콤 김치만두

1순위 원료

*수입완제품

밀가루 40%

원산지 표시대상 : 캐나다 밀가루

2순위 복합원재료

배추김치 2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배추 40%, 국산 무 30%,

국산 고춧가루 20%, 국산 소금 1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배추, 국산 고춧가루

3순위 원료

*수입완제품

빵가루 20%

원산지 표시대상 : 미국 빵가루

3순위 외 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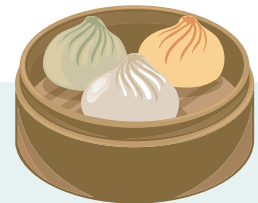
돼지고기 10%, 대파 5%, 고추 5%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돼지고기 100%, 국산 대파 100%, 중국산 고추 100%

원산지 표시대상 : 해당 없음

▶ 원산지 표시 : 매콤 김치만두

[밀가루(캐나다), 배추김치(배추 : 국산, 고춧가루 : 국산), 빵가루(미국)]



③ 수입한 복합원재료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 수입신고필증 상의 원산지 '국가명' 표시(「대외무역법」에 따름)

(상황별) 표시기준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할 경우

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

예시

— 맛나 야채죽

1순위

원료

쌀 8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40%, 중국산 40%, 미국산 2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40%, 중국 40%

2순위

원료

당근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당근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당근

3순위

원료

대파 10%

원료 구성성분 : 국산 대파 100%

원산지 표시대상 : 국산 대파

▶ 원산지 표시 : 맛나 야채죽

[쌀(국산 40%, 중국 40%), 당근(국산), 대파(국산)]



◆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혼합 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 혼합 비율의 변경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② (허용) 혼합 비율 생략이 가능한 경우

*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 표시

-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 혼합 비율을 표시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 단, 국내산 혼합 비율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혼합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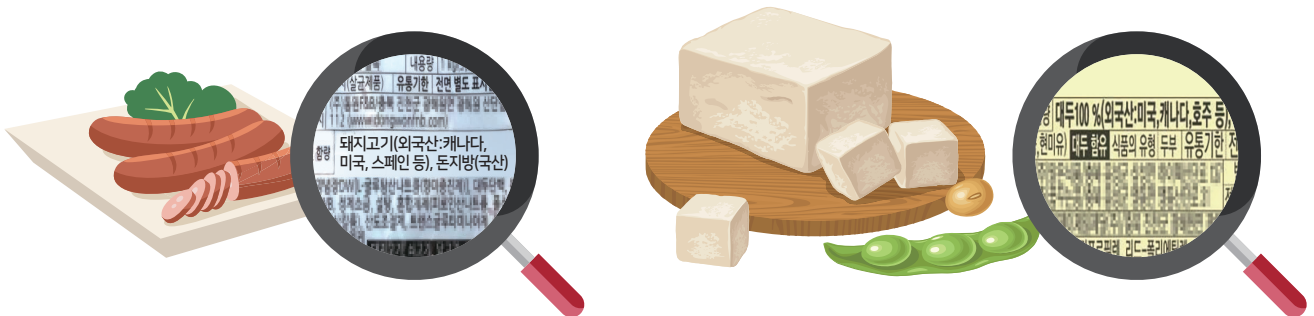


◆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① (원칙) 원산지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하여 표시

② '외국산(A·B·C국 등)' 또는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신제품으로 원료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②-① '외국산(A·B·C국 등)'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포장재에 직접 표시한 국가 이외의 원산지 원료로 변경된 경우

-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포장재 사용 가능

②-② '외국산(국가명은 00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하였을 경우

- 원산지는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추가해야 함
- 원산지 표시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함

③ '외국산'으로만 표시 가능한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6개국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원료로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포함)



◆ 국산(국내산)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사용된 원료 중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국내산)일 경우

표시방법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 및 수입 및 반입 가공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 ① 원칙 : 제품 포장재에 해당 원산지를 직접 인쇄
- ② 허용 :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표시 가능

구분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위치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 *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크기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u>진하게(굵게)</u> 표시 *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경우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2.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① 풋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구분		제작기준	글자크기
풋말		가로8cm x 세로5cm x 높이5cm 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
안내표시판	진열대	가로7cm x 세로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스티커(상품에 부착)		가로3cm x 세로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0포인트" 이상
일괄 안내표시판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 사용 불가)		가로14cm x 세로10cm 이상	

3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공통 사항

표시문자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 가능
글자 위치·크기·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 *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

(통신매체별) 표시사항

◆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배달앱, TV 등)

	표시위치	표시시기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기준)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허용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시 가능 =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	

◆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위치	글자크기	글자색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이상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가능	광고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 가능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표시 방법	원칙	농산물, 가공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허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알아두기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4 벌 칙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①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② 과징금 :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③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④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구분	과태료금액			
	위반행위	1차	2차	3차
과태료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5~1,000만원 이하 *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20~1,000만원 이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1,000만원 이하)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산(국내산) 농산물 : 222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상품목
미곡류(6)	쌀, 찰쌀, 현미, 벼, 발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울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6)	배추·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근채류(7)	무말랭이, 무·알타리무·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쪽파·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파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콜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 (약재)류(66)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총총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뽕은감, 꽃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2)	쇠고기(한우, 육우, 젓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기타(6)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뽕잎, 누에번데기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225)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4)	과자, 캔디류(양갱), 빵류, 떡류
빙과류(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9)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당 류(3)	엿류(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잼 류(2)	잼, 기타잼
두부류 또는 묵류(4)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30)	식물성유지류[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류(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면 류(4)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음료류(18)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품차), 커피(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9)	조제유류(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특수의료용도식품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장류(14)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9)	식초(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5)	김치류(김치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주류(1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농산가공식품류(14)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찹쌀, 효소식품, 기타 농산가공품류(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12)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알가공품류(9)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유가공품(35)	우유류,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유(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5)	기타식육, 기타알제품,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 추출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4)	로열젤리류(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즉석식품류(17)	생식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만두류(만두, 만두피), 간편조리세트
기타식품류(2)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장기보존식품(3)	병·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55)

영양성분(3)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기능성원료(51)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투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유코다당·단백(축산물을 원료로 한 것),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대두단백, 홍경천, 빌베리, 마늘,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항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 원산지표시 대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을 주원료 또는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신고를 하여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수입 및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 1 참고